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14 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 김도읍 • 권성동 • 박대출

구자근・조승환・곽규택

주진우 • 이성권 • 정희용

조지연 • 박형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,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.

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·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·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 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 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.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1조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2조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 자
- 제3조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4조(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5조(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의 개정)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6조(「청소년 기본법」의 개정)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- 제7조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의 개정)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긴급전화센터, 상담소	제8조의2(긴급전화센터, 상담소
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	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
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준) ①
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	
센터의 장, 상담소의 장, 보호	
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	
전화센터·상담소 및 보호시설	
종사자가 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	
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	
에 종사할 수 없다.	
1. <u>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</u>	1. 미성년자・피성년후견인 또
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	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
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아니한 자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	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상담소, 보호시	
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	
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	
수 없다.	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 ①	제10조(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	
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6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	
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 • 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청소년지도사) ① ~ ③	제21조(청소년지도사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	
가 될 수 없다.	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5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수런시설의 대표자(법인의 경	
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	
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.	
1. <u>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</u>	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
는 피한정후견인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